

의안
번호

172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172호
제 출 자	김경이 의원 외 13 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1. 제안이유

- 가. 일·가정 양립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의회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임.
- 나. 성북구의회 의원이 임신·출산 시 출산 전·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.
- 다.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며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반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의원이 체포, 구금 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)
- 나. 임신 중인 의원의 창가 및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제3항)
- 다.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제4항)
- 라. 의원의 청가 기간 경과 후 불출석 때 관련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. 위원회 불출석 때 관련 규정을 신설 함 (안 제8조 5항, 제8조 6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4. 검토 의견

- 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 은 의원이 체포, 구금 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였고
 - 안 제8조 제3항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·후 휴가를 주는 규정으로 「근로기준법」¹⁾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및 「지방 공무원복무규정」²⁾ 제7조의7(특별휴가)에 의거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
 - 안 제8조 제4항은 배우자에게 출산 때 휴가를 주는 신설 개정안으로 「남녀고용평등법」³⁾ 제18조의 (배우자 출산휴가)」과 근로기준법,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와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기 위한 신설 개정안이고
 -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청가 기간의 경과규정 및 회기 기간 중 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
 - 「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」 안 제7조 (지방의원의 결석, 지방의원의 청가)에 성북구의회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,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음
 - 검토 결과, 본 조례 일부개정(안)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됨.
-

1) 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120일)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14. 1. 21.>

2) 지방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 (특별휴가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6. 30., 2021. 11. 30., 2021. 12. 31., 2023. 7. 18.>

3)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할 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<개정 2012. 2. 1., 2019. 8. 27.>